BK21 플러스 전통기록물 분석·활용·아카이빙 전문가 양성 사업팀 운영 내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의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규정(이하 "사업관리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경북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전통기록물 분석·활용·아카이빙 전문가 양성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사업팀 구성) 사업팀은 사업팀장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참여대학원생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팀장의 권한과 책임) 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① 사업의 총괄 수행
②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③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사업팀 전담직원 인건비 결정
⑤ 기타 사업팀 세부운영 사항 등

제4조(사업팀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업팀장, 분과별 책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 사업팀 전담직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맡는다.

2. 회의 개최 및 의결
회의는 매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매월 1회 참여교수 전체가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사항을 보고한다.

3. 심의 및 의결 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② 사업팀 구성 인원
③ 사업팀 예산 및 결산
④ 사업팀 규정 제정 및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사업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팀 자체평가위원회)

1. 목적
본 사업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사업팀의 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된 진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다.

2. 운영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위원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
나.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사업팀 운영시스템 개선

4. 자체평가 방법
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항목을 평가함
* 정성항목 :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참여교수 연구실적, 사업팀 운영 계획의 추진성과, 운영계획의 적정성, 성과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사업비 집행 등 6개 항목
나. 정성지표 평가방법
* 평가척도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5. 자체평가 절차
가. 평가 기준 수립 및 점검
* 평가 분야, 지표, 배점 조정, 확정
나. 항목당 서면 평가자료 검토
다. 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 보고
마. 문제점 개선

6. 자체평가위원회의 기타 제반 사항은 경북대규정 제8조 및 교육부운영지침에 따른다.

7. 자체평가위원회의 외부평가위원 전문가활용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지급 규정에 따라 전문가활용경비(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내부 집행 규정을 따른다.
제7조(회계기간)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제8조(지원 자격)

1. 계약교수
   1)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기준으로 A&HCI, SSCI, SCI(SCIE 포함)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300% 이상을 게재한 자. (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2. 박사후과정생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기준으로 A&HCI, SSCI, SCI(SCIE 포함)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300% 이상을 게재한 자. (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제9조(선발 절차)

1. 신진연구인력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2. 신진연구인력 채용 심사위원은 사업팀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심사 단계 및 단계별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신진연구인력 심사단계 및 심사항목>

단계	1단계			2단계
심사항목	학위논문의 질적수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경력 및 활동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면접 및 연구계획서 평사)
배점	20점	30점	30점	20점

제10조(임용)

1.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2. 신진연구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경북대학교 박사후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11조(자격 및 의무)

1.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강의를 할 수 있다.
   1) 계약교수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학점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2)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학점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교내 강의에 대해서는 사업팀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에서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1) 신진연구인력은 당해 사업 연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저서와 역주서는 논문 200%로 인정한다.
   3) 공동연구논문은 경북대학교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한다.
   4) 발표한 논문 중 1편은 사업팀의 아젠다와 유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보수)

1. 신진연구인력에게는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한다.

2. 법정 부담금(4대보험)을 지급하며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1년마다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여 지급한다.

3. 보수지급일은 경북대학교 보수 지급일을 준용한다.

제13조(신진연구인력의 활용)

1.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데 참여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활동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도 · 관리한다.

제14조(연례평가)

1.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평가를 실시한다.

2. 연례평가는 신진연구인력 평가위원회(참여교수 3인)에서 실시한다.

3.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시점에 연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4. 연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신진연구인력의 재임용 과정에 반영한다.

제15조(계약기간 및 제한)

1. 박사후과정생 중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계약교수 중 경북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각각 3분의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제4장 참여(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급

제16조(목적) 본 규정은 본 사업팀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기구)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플러스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사업팀장(위원장), 사업팀장이 임명하는 BK21플러스 사업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제19조(참여대학원생 대상, 학술 지원 및 의무)

1. 참여대학원생은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하며,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이어야 한다.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표 2 참여대학원생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방법
직전학기 성적 (20점)	전체 A+			20	정량
	전체 A			15	
	전체 B+			10	
연구실적 (60점)	등재(후보)지 논문 편수 (20점) 박사과정은 최근 4년 기준 / 석사과정은 최근 2년 기준	2편 이상		20	정량
		1편 이상		15	
		실적 없음		5	
	최근 4년간 등재(후보)지 대표 논문의 질적 우수성 (20점) 박사과정은 최근 4년 기준 / 석사과정은 최근 2년 기준	전공교수에 의한 peer review	상	20	
			중	15	
			하	10	
	학업계획서 (10점)	상		10	정성
		중		5	
		하		3	
	학업결과보고서 (10점)	상		10	
		중		5	
		하		3	
학회발표 (20점)	학술대회 발표건수 (5점)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내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		5	정량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내학술대회 발표 1건 미만		3	
	학술대회 발표의 우수성 (15점)	상		15	정성
		중		10	
		하		5	

(신규 신청자는 연구실적 중 학업결과보고서는 제외하고 학업계획서의 배점을 '20·10·6점'으로 함)

2.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3.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4.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5.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www.minwon.nhis.or.kr)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의 모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7. 참여대학원생은 교육과 연구와 관련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단기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 경비를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절차 및 선발 기준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BK21플러스 사업관리운영 지침」과 사업팀이 정한 「국제화경비 운영 규정」에 따른다.
  2) 참여대학원생은 등재(후보)지에 한해 사업팀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술지 논문 심사 및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게재료를지원받을 수 없다.
  3) 참여대학원생은 국내학회 발표 및 참여와 관련하여 국내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내 여비는 대학이 정한 여비 규정에 따르며, 사업팀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20조 (지원대학원생 대상 및 지급액)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60만원 이상 지급 가능)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급 가능)
  3) 단, BK21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과 타사업(R&D) 인건비의 월 총액이 석사과정생은 180만원, 박사과정생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 총액 초과 시 BK21플러스 사업과 타사업(R&D)의 참여율 조정을 통하여 BK21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6개월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기간 중 사업팀장과 참여교수 전체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면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사업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을 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의 취업, 휴학, 기타 사유로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장학금은 미지급한다.

4. 지원대학원생 차등지급 기준
  1) 박사과정생 중에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연구장학금을 월 100만원 이상 250만원 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차등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팀 주제와 관련된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예 ; 한문학, 국문학, 역사학, 미술사학, 인문학, 정보학, 기록학, 컴퓨터공학 등)
    ② 경북대학교 신진연구인력 채용 기준에 준하는 경력 및 연구실적을 확보한 자
    ③ 사업팀의 학과 및 사업팀 주제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 차등지급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사업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다.
    ② 사업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데 참여한다.
    ③ 사업팀의 활동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도・관리한다.
  2) 석사과정생 중에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연구장학금을 월 60만원 이상 180만원 내에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차등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팀의 학과 및 사업팀 주제와 관련된 직군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사업팀 주제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차등지급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사업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다.
    ② 사업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데 참여한다.
    ③ 사업팀의 활동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5. 연구장학금은 지원대학원생 개인 통장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지급한다.

제21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절차)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사업팀이 정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2. 매년 2월과 8월 말에 사업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학원생 모집을 공고한다.

3. 연구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이 정한 선발 기준을 증빙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대학원생의 최소 자격 : 지원대학원생은 직전학기의 학업 성적이 B-(평균 평점 2.7)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대학원 신입학생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5. 지원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아래 각 호의 선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 직전학기 성적 (석사과정 신입생은 학부과정 성적)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실적
  3) 학업계획서 및 학업결과보고서
  4) 국내 · 외 학술대회 발표실적

제22조 (지원대학원생의 의무) 지원대학원생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팀이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학원생은 지원 시작 시점에 사업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은 선발된 이후 1년 이내에 학술논문을 등재(후보)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이 발표 의무 편수는 6개월을 기준으로 0.5편으로 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지원 시작 후 1년 이내 학술 실적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팀이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한 지원대학원생은 사업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지원대학원생의 인센티브 지급) 지원대학생의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은 사업팀이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지원대학생의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목적은 사업팀 연구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2. 지원대학원생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사업팀장, 참여교수 2인으로 한다.

3. 평가는 연 1회 진행하며, 2월 중으로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다.

4. 평가 영역은 연구 성실도, 연구 실적, 사업팀 기여도로 나누어 평가한다. 평가 영역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참여대학원생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다.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매해 실제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 기준 점수는 조정할 수 있다.

5.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등급별 지급액은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업팀 연구장학금 예산' 범위에 따라 등급별 지급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BK21플러스 연구장학금, 인센티브 및 타과제 참여 인건비의 총액이 월 상한액(석사과정 180만원 / 박사과정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등급별 지급액 이하로 지급한다.

<표 3 인센티브 지급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 방법
성실도	성실한 연구 진행	연구 일수 및 시간 주당 연구 일수 및 연구 시간 평균치 기준		1~25점		정량
연구	학술지 게재 실적	국내 등재(후보)지 논문		1편당	20점	정량
		국제 SCI급 논문		1편당	40점	
	학회 및 학술세미나	국내	발표	1회당	10점	정량
			참석		5점	
		국제	발표	1회당	20점	
			참석		5점	
봉사	사업팀 기여도	관련사업 참여 관련 회의, 전문가 특강, 현장학습, 스터디 등 전체 관련사업 진행 횟수 기준 참석율 기준		1~25점		정량
		관련 사업 기획 및 진행		1~25점		정성

<표 4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지급액(예시)>

(단위 : 천원)

평가점수	평가등급	연 지급액	비고
90이상 -	A	450	
80 - 90미만	B	200	
80미만	C	170	

제5장 국제화 경비 운영

제24조(국제화 경비 지원 항목) 국제화 경비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참가, 단기 해외연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참가 경비 지원)

1. 경비 지원 요건과 대상
  1)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4개국 이상 참여
    ② 총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③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대학원생 :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② 참여교수 : 발표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신진연구인력
④ 단순참가의 경우(발표자 또는 토론자가 아닌 경우) :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 가능

2. 경비 지원 범위
1) 지원 금액은 공항까지 이동하는 국내여비, 항공료의 실제소요금액 및 체제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2)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당 1인에 한해 항공료,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여비를 전액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국제학술회의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 학회당 1인에 한해 항공료를 지원한다.(집행 여부는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는 사업팀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5) 동일 항목(항공료, 체제비)에 대하여 타기관(연구비 포함)과의 중복지원은 불허한다.
6) 선발 지원 및 지원액은 사업팀 당해 배정 예산 범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3. 경비 지원 신청
1)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4주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학술회의의 발표 및 참가에 대한 경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출장명령서 1부(별지2호 서식)
③ 계획서 1부(별지3호 서식)
④ 국제학술대회 인정ㆍ지원기준 확인서 1부(별지4호 서식)
⑤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⑥ 항공권 INVOICE 1부
⑦ 학회 Accept Letter 1부
⑧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4. 지원을 받은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부 (별지5호 서식)
② 항공권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확인 및 신분확인이 가능한 면 각 1page) 1부
④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개제 부분 1부

⑤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5.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26조(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1. 자격
1) 사업팀 소속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으로 학업성적, 연구진행 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
2)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해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교수 단독 연수는 지원을 불허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2회로 제한한다.

2. 단기 해외 연수 지원자 선발 절차
1) 단기 해외 연수 신청
- 지원자는 사업팀이 지정하는 서류(별지 6, 7, 8호 서식)를 소정 기일까지 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기 해외 연수 지원 선발
① 대상자는 사업팀이 지정하는 서류(별지 6, 7, 8호 서식)와 연수대상기관, 연구 관심분야, 국제협력프로그램 개설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서 심의 후 선정한다.
② 성적(20), 연수 계획서(40), 전공 및 연구분야와의 적합성(20), 연수 결과의 효과(20)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연수 학생을 선발한다.
③ 선발 인원 및 지원액은 사업팀 당해 배정 예산 범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3) 단기 해외 연수 위탁 기관 선정 기준
- 단기 해외 연수 위탁 기관은 본 사업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비지원
1)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2) 항공기 실비와 체제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단, 미주/유럽지역 최대 500만원, 아시아지역 최대 3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단기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는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② 신진연구인력의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외 연수
③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료, 여권 발급 수수료
④ 단순 어학 연수
3) 연수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단기 해외 연수 지원 후

1) 연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별지 9호 서식)를 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해외연수생은 본 사업팀의 학술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5.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해외연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참여교수의 선정, 교체 및 평가

제27조(참여교수 선정·교체)

1. 목적

본 규정은 사업팀 참여교수의 신규 선정, 교체 및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정

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최근 3년간 업적을 기재한 신규참여교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양식(별지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교수의 신규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결정한다.

3. 교체 및 변경

1) 최근 2년 이내 KCI 및 SCI에 본인이 주저자인 논문편수가 0편일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교체한다.

2)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팀의 참여교수 변경(제외) 시에는 사업팀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교수 변경(제외)으로 인해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탈퇴

참여 교수 중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결정한다.

5. 준용

이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경북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정(안) 및 BK21플러스 사업 관련 교육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6. 세부사항

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팀장이 정한다.

제28조(참여교수 평가)

1. 사업팀은 매년 1회 이상 참여교수의 업적을 평가한다.

2. 평가항목과 기준은 사업팀이 정한 세칙에 따른다.

<표 5 참여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방법
봉사	사업팀 기여도	사업팀 운영 · 관리에 대한 기여도	1 ~ 20점		정성
		연구과제 기획	1 ~ 20점		
		분과별 성과	1 ~ 10점		
교육	대학원생 지도 및 배출 실적 / 특성화 강좌 개설	지도학생 논문 발표 실적	1편 이상	5점	정량
		지도학생 논문 게재 실적	1편 이상	10점	
		졸업생 배출 실적	석사 1명당	5점	
			박사 1명당	10점	
		특성화 강좌 개설	1과목	10점	
			2과목 이상	15점	
연구	국내 학술지 게재 실적	등재(후보)지 논문	1편당	10점	정량
	국제 학술지 게재 실적	저명 학술지 논문		15점	
		일반 학술지 논문		5점	
기타	교내 위원[1]		10점		정량
	대외 활동[2]		10점		

<표 6 평가 등급별 성과급 지급액(예시)>

(단위 : 천원)

평가점수	평가등급	연 지급액	비고
90이상 -	A	1,100	
80 - 90미만	B	800	
80미만	C	600	

1) 교내 위원 : 본부 부처장급, 도서관장, 박물관장, 미술관장, 대학원장, 연구소장 등

2) 대외 활동 : 국가직 공무원 고시 출제, 학회 임원, 시민 강좌 등

3. 사업팀장은 참여교수의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사업팀 운영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1) 예산의 차등 분배 및 성과급 지급
   2) 참여교수의 사업팀 참여 유지와 교체

제29조(지급대상) 성과급은 사업팀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30조(지급기준)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사업팀 기여도, 대학원생 지도 및 배출 실적, 논문 및 저서 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팀 성과금' 예산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등급별 지급액은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성과급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는 사업팀장,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된다.

제7장 기타

제3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및 경북대학교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 2차 개정됨.
4. 2016년 10월 10일 2차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12월 5일 3차 개정됨.
6. 2016년 12월 5일 3차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7월 31일 4차 개정됨.
8. 2017년 7월 31일 4차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 5차 개정됨.
10. 2017년 11월 21일 5차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사업팀의 수행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2.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